



ISSUE BRIEFING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연구책임 조원지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vol.284

연구진 전희진 연구위원
이병훈 전문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과 한계
고용허가제(E-9) 고용 및 취업 절차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방향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1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통해 인력난을 해결해왔음
- 특히,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E-9)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C-4, E-8)’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E-8)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계절근로자 도입의 주체는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이며,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연 2회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게 됨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1) 지자체와 계절근로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2)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3) 문화예술(D-1), 유학(D-2), 여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등 사증을 소지한 계절근로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음
- 계절근로자의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 짧은 체류기간 등으로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¹⁾
-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계절근로자가 1회 연장(3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자체에 최대 8개월간 머무를 수 있도록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주거환경 개선(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과 추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치와 관리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이 매우 중요함
- 또한, 2022년 10월 4일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지역 외국인 우수 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F-2)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유치와 사증 발급·관리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커지고 있음
- 행정·재정상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앞둔 전라북도는 심각해져 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최대 활용하여 계절근로자제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도내 계절근로자의 합법적·안정적 장기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제안해보고자 함

1) 조원지 외(2022).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 전라북도의회.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²⁾의 운영과 한계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단기간(3개월, 5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15년 충청북도 괴산군과 보은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됨(최서리, 이창원, 2016)
- 2016년 강원도 양구군, 충북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5개월로 확대되면서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됨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칙은 1)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 의무화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3)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4)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를 포함하고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신청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업종은 ‘5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계절성이 있는 농어업’임
 - 농·어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 단기취업비자 기간동안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나,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거나 계절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농에게 지역농협에 의해 고용된 계절근로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최소 하루 단위로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2022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음

〈표 1〉 농업분야 허용 작물 및 재배면적별 허용인원

허용작물	재배면적(단위 : 1000㎡)				
	재배면적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벼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꽃감 가공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100점 미만	100이상
허용인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하

- 계절근로자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1)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2)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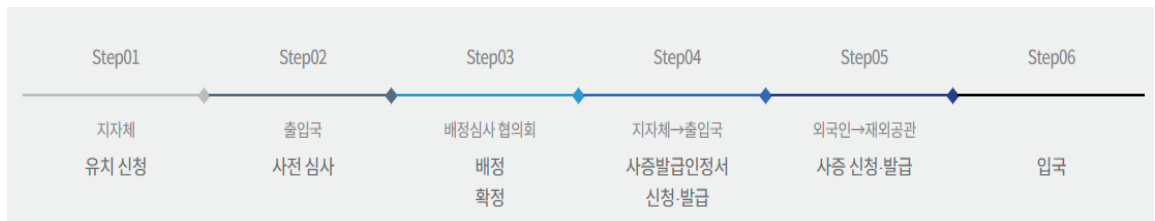
2)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참고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표 2〉 계절근로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체류자격	계절근로자 선정 방식	근로분야
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
E-8-2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
E-8-4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E-8-5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농업
E-8-6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어업
E-8-99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	기타

- (E-8-1)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간 계절근로 수급 관련 MOU를 체결하여 해당 외국 지자체가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 지자체에 추천함. 국내 지자체는 추천된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한 후 초청 절차를 진행하며,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농업 분야에서 5개월 이내 종사할 수 있음
 - (E-8-2)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을 국내 지자체에 추천하면, 국내 지자체가 이들을 농가에 배정한 후 초청 절차를 진행하고,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5개월 이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음
 - (E-8-5) 기타(G-1-19)자격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주가 국내 지자체에 재고용을 추천하면, 국가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 절차를 진행하고,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5개월 이내로 종사 가능함
- 외국인 배정 과정은 배정심사협의회가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인원을 배정하면, 지자체는 농·어가, 농업·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당 연간 최대 14명까지 배정 가능함(면적 기준 9명에 추가로 5명이 가능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5개월이지만, 1회 연장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음



〈그림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한계³⁾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번기의 부족한 노동력을 농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으나,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자주 발생하면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은 농가에게 농업인력에 맞춰 세워진 영농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가는 대체인력 수급에 따른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함

3) '조원지 외(2022).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 전라북도의회.' 재정리함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 고용허가제(E-9)와 달리,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리업무 전반을 대행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현재 계절근로자 선발부터 교육, 관리까지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농협은 근로자 선발에서 민간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현지에서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행정·재정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 고용허가제(E-9)와 다르게 계절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⁴⁾ 계절근로자의 다소 짧은 체류기간은 무단이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4년 10개월 동안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성실근로자에 한해 체류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음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200점 만점)에 응시하여 총득점 8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는 반면, 계절근로자는 국내-외국 지자체의 MOU, 결혼이민자의 소개로 지원하여 입국 가능함
- 무단이탈 문제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의 미흡함으로 발생하는 농업인과의 문화적 갈등임
- 계절근로자의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한국문화 이해 부족, 낮은 작업 숙련도에 따른 체류 초기 고용주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고용주-근로자의 갈등과 고용주의 낮은 만족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한계로 들 수 있음

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민·외국인정책 방향

-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2023년 1월 17일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음
-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는 다양한 분야의 법규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전북은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방안으로, '지역 주도적 인력확보'를 위한 지자체장의 사증발급절차, 체류자격변경, 연장 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특별법에서 이민·외국인정책은 (중·고등학교)외국인 유학생, 생명경제 분야 기술연수자격 확대, 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농업인력 부족, 농촌인구 감소 문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문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대상 특례 발굴이 다소 부족함
- 단기, 중장기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계절근로자의 합법적·안정적 체류와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2023년부터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음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3 고용허가제(E-9) 고용 및 취업 절차

- 비전문취업(E-9)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⁵⁾(1회 연장하여 최대 3년 체류 가능)
 -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E-9-3)는 작물재배업에 종사 가능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작물재배업(011)은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된다'로 정의됨
- 고용허가제(E-9)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선발의 공정성·투명성과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력 제고를 위해 2005년 8월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에 응시하여 총 2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 취득해야 함⁵⁾
 - 응시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1) 연령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필리핀의 경우,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이고, 2)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 3)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출국된 경력, 4) 출국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5) E-9(비전문취업) 또는 E-10(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 합산이 5년 미만이어야 함
 -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산업안전에 관한 기본지식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함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중 건강검진에 통과한 구직자는 구직 신청기간에 맞춰 구직 등록을 하고 송출기관은 명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출함
- 정부기관은 구직자를 사용자에게 알선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한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됨
-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는 현지 사전교육기관에 입소하여 한국 취업에 필요한 사전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입국 후 16시간 동안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취업교육 이수와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배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그림 2〉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취업절차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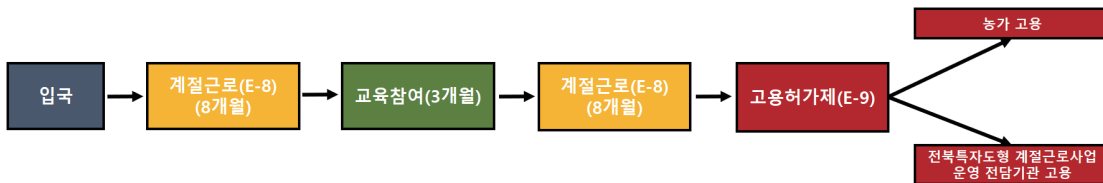
4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방향

가.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념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계절성이 있는 농업 부문에서 단기간 고용되어 농업노동력을 제공하는 성실 계절근로자(E-8)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 전북특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8개월간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농가의 재고용이 보장된 계절근로자 중 안정적·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 희망자는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능력, 숙련도 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며, 성적우수자는 8개월간 계절근로(E-8) 프로그램을 거쳐 법무부에 지자체장이 이들을 추천하면 사증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임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계절근로자는 1) 체류기간을 1회 연장한 성실 외국인 계절근로자(8개월 체류)로, 2) 이들을 적극적으로 재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주가 있어야 하며, 3)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 시 4년 10개월 동안 신청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해야 하고, 4) 국내의 법령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함

나.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절차는 <그림 3>과 같음



<그림 3>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절차

- (선발) 입국한 계절근로자(공공형 계절근로자 포함)는 작물재배업에 최대 8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사용주가 지자체에 해당 계절근로자의 재고용 의사를 밝힌 경우, 계절근로자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교육프로그램)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3개월간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관에 체류하면서 한국어교육, 농업 지식과 기술, 한국문화 등을 교육 받게 됨
 - 농업교육의 경우,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한 농업 기초교육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농업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작물재배에 필요한 용어와 기술을 학습하게 됨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 한국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한국문화체험, 사용자와의 관계 개선과 의사소통을 위한 노무관계 교육,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등을 받게 됨
-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동안 계절근로자의 교육비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체류비를 자부담으로 함
-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계절근로자 중 한국어수행능력과 교육 참여도를 기반으로 선발된 성적우수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가능한 계절근로(E-8)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고용허가제 전환을 위한 계절근로) 성실하게 8개월간 종사한 계절근로자는 지자체장 추천으로 법무부로부터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게 되고, 지자체는 이들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 등록을 지원함
-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농가 또는 전북특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운영 전담기관에 고용됨. 농가가 전담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면 최소 1주일 단위로 기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농업노동력을 농가에 제공함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가구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을 제공하면 유급으로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 보호와 장기 취업·체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이문호, 2023)

다.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기반 조성

☞ 전담부서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시·군이 유치한 계절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업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와 전담부서 설치·운영이 필요함
- 전담부서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계절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계절근로자 DB를 구축하고 관리함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과 종합계획 및 시행지침을 마련함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운영 전담기관을 관리·감독함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운영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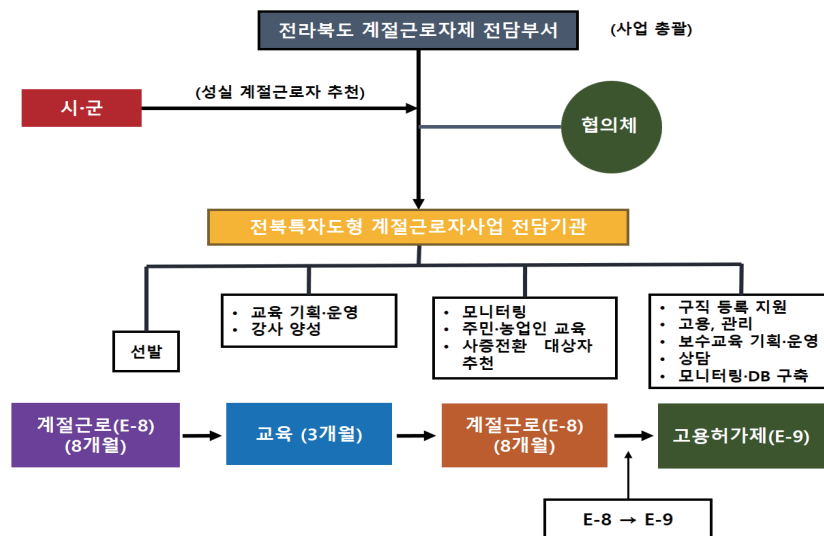
- 전담기관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성실 계절근로자를 선발하고 사증 전환 후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정착지원 등 관련 사업을 운영·관리함
- 성실 계절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한국어, 농업, 한국문화, 노무, 인권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자료 개발 및 강사 DB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함
 - 강사진은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민,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수교육을 기획·운영함
 -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로 전환 후, 이들의 한국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기획하고 운영·관리함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 전북 농업인력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보라는 점에서 이들이 지역주민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주민의 다문화 감수성과 문화 개방성을 높이는 교육, 주민-외국인근로자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지역주민 간의 언어와 문화차이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함
- 계절근로자의 장기체류에 따른 가족 형성 또는 가족 이주가 진행된다면 개인에서 가족 단위의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함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사업 협의체 운영⁶⁾

- 고용허가제(E-9) 사증으로 전환하여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적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도지사, 시·군단체장, 계절근로자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의 실무자 및 지역활동가,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인 농업인 대표, 관련 기관(외국인출입국사무소,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시·군 실무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함
- 협의체는 전북특화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계절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삶의 질 증진, 농업인력 부족 해소, 지역 활성화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함



〈그림 4〉 전북특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 추진체계

6) 조원지, 정호중. (2023).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이슈브리핑, 279. 전북연구원.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표 3〉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와 전북특자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전북특자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성이 있는 작물재배업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성이 있는 작물재배업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 중장기적 농업 인력난 해소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성실 계절근로자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전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으로서 성실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서 성실 계절근로자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형) 지자체에서 선발한 계절노동자를 농가에서 직접 고용 (공공형)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 계절성으로 5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작물재배업에 종사(최대 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형과 공공형 성실 계절근로자(E-8) 중 사증을 고용허가제(E-9)로 변경을 희망하는 계절근로자가 일정 교육 이수(3개월)와 교육 후 계절근로(8개월) 종료 후 사증(E-8)을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에서 고용허가제(E-9)로 전환 교육과정 중 교육비 및 주거비 지원(체류비 자부담) 교육·실습·체험 프로그램 : 한국어, 농업, 한국문화, 인권, 노무 등 관련 주제 고용허가제(E-9) 전환 후, 안정적 정착·적응을 위한 보수교육, 상담, 모니터링 등 지원 계절근로자 교육, 관리·모니터링 등 담당 부서 및 전담기관 설치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번기 농업 인력난 및 무단이탈 완화 경제활동인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번기 농업 인력난 및 무단이탈 완화 중장기 농업인력 확보 및 인구감소 문제 완화 경제활동인구 유치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체류에 따른 가족 정착으로 농촌인구 증가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조성에 따른 전북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교육사업을 위한 강사양성을 통한 농촌일자리 창출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문호. (2023).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소멸위기 대응. G-Brief, 183. 경남연구원.

조원지, 나정호, 정호중. (2022).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 전라북도의회.

조원지, 정호중. (2023).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 이슈브리핑, 279. 전북연구원.

최서리, 이창원. (2016). 계절근로자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IOM 이민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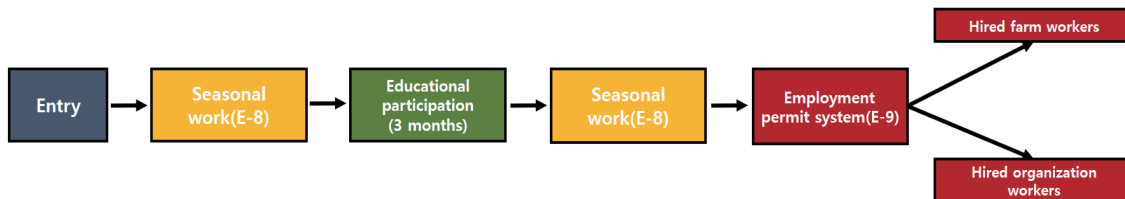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The Jeonbuk Seasonal Foreign Worker System to Overcome Agricultural Labor Shortage i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on-Jee Cho, Research Fellow

With the rural population aging and decreasing, seasonal foreign workers, who could be employed for a maximum of 8 months, has alleviated the labor shortage in the agricultural areas. The unauthorized departure of workers has raised social concerns and, furthermore, there's a growing negative perceptions towards seasonal laborers. As Jeonbuk prepares for its transition into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is essential to explore ways to activate seasonal workers program by maximizing the autonomy of the Jeonbuk governor. We need a Jeonbuk Seasonal Foreign Worker System to facilitate workers' legal and stable long-term residence within Jeonbuk; and, the program contributes to alleviating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labor and enhancing vitality in rural areas.

Th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odel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involves empowering the Jeonbuk governor to implement the program. This program would allow diligent seasonal workers(E-8) to change their residency status to an employment permit(E-9) in rural areas.



Before their reemployment, seasonal workers would participate in a 3-month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kills. Outstanding performers would then transition from the Seasonal Workers(E-8) program to the Employment Permit(E-9) visa. The governor, upon recommendation to the Ministry of Justice, could facilitate this transition for qualified seasonal workers. This program is expected to contribute not only to alleviate the agricultural labor shortage but also to revitalize local economies through attracting an active workforce and population growth. Additionally, it aims to enhance Jeonbuk rural living condi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rural infrastructure and create rural job opportunities by training instructors for educational program targeting foreign laborers.

Key words

Seasonal foreign work(E-8) system,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employment Permit(E-9)

iSSUE
BRIEFING vol.284

The Jeonbuk Seasonal Foreign Worker System to
Overcome Agricultural Labor Shortage i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on-Jee Cho, Research Fellow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